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52) 분류 K2-7	(45) 공고일자	2007년08월08일
	(11) 등록번호	30-0458587
	(24) 등록일자	2007년08월02일

(51) 국제분류	03-01
(21) 출원번호	30-2007-0000189
(22) 출원일자	2007년01월03일

부분디자인(M01)

(30) 우선권주장	JP-D-2006-00017913	2006년07월06일	일본
------------	--------------------	-------------	----

(73) 디자인권자	가부시키키가이샤 시마노 일본국 오사카후 사카이시 사카이쿠 오이마즈쵸 3쵸 77반치
------------	--

(72) 창작자	호소미 야스오 일본국 오사카후 사카이시 사카이쿠 오이마즈쵸 3쵸 77반치 가부시키키가 이샤 시마노나이 키무라 요코 일본국 오사카후 사카이시 사카이쿠 오이마즈쵸 3쵸 77반치 가부시키키가 이샤 시마노나이
----------	---

(74) 대리인	김성호
----------	-----

담당심사관 허정애

(54) 낚시용 가방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낚시용 가방

디자인의 설명

1. 본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낚시용 가방이다.
2. 본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재질은 천연섬유 또는 인조섬유로 된 천,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져 있다.
3.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내지 4에 의하여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부분을 특정하고 있다. 상술한 도면에 있어서, 적색으로 착색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다.

4. 참고도 5는 본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낚시용 가방의 덮개 전체를 슬라이더의 당김 고무로 고정된 상태를 도시하고 있고, 참고도 6은 본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낚시용 가방의 사용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5.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참고도 1, 3, 5 및 6에 도시된 문자는 디자인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6. 본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낚시용 가방은, 사용 상태를 도시하는 참고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천을 커버하는 덮개를 연 상태로 낚시용 가방을 기울임으로써, 낚시용 가방 내에 크릴 새우 등의 미끼를 넣어 놓은 때에는 미끼로부터 나오는 여분의 수분을 메시천으로 빼거나, 낚시용 가방 내에 포획한 물고기를 헤엄치도록 해 놓은 때에는 물고기를 놓치는 것 없이 낚시용 가방 안의 물을 바꾸어 넣거나 할 수 있는 것이다.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낚시용 가방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곡선 및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상 및 모양으로, 공지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을 느끼도록 창작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사시도 】  
도면대용 사시사진



【 정면도 】  
도면대용 정면사진



【 배면도 】  
도면대용 배면사진



【 좌측면도 】  
도면대용 좌측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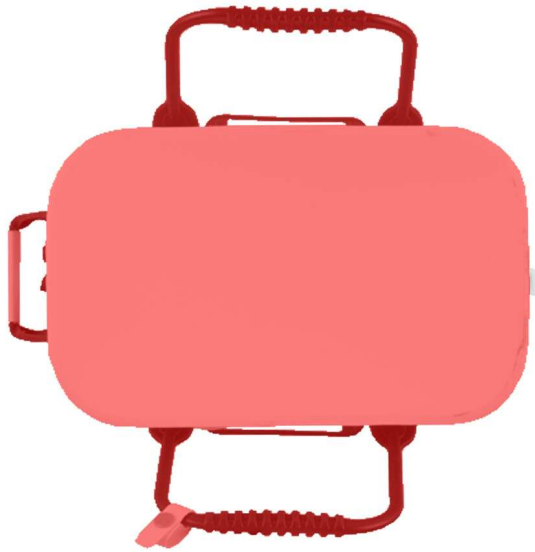
【우측면도】  
도면대용 우측면사진



【평면도】  
도면대용 평면사진



【 저면도 】  
도면대용 저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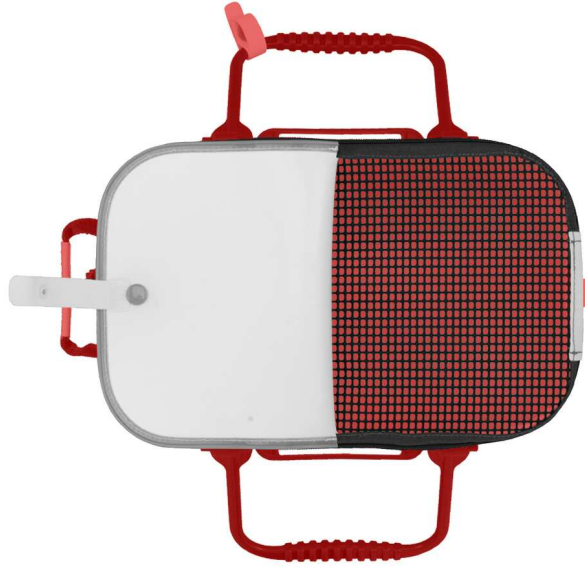


【 참고도 1 】  
메시천을 커버하는 덮개를 연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대용 사시사진



【참고도 2】

메시천을 커버하는 덮개를 연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대용 평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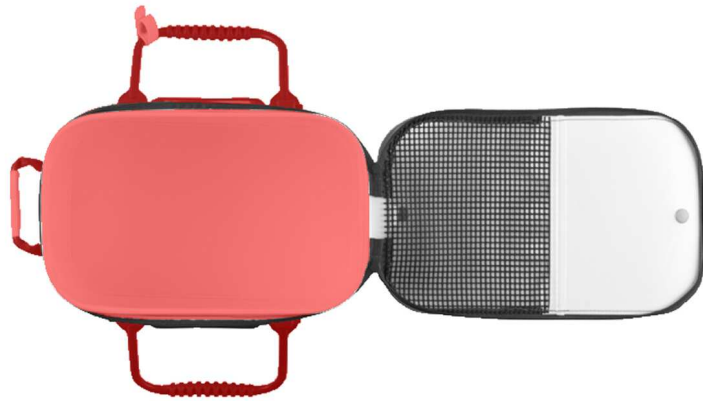
【참고도 3】

덮개 전체를 연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대용 축소 사시사진



【참고도 4】

덮개 전체를 연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대용 축소 평면사진



【참고도 5】

덮개 전체를 파스너의 당김 고무로 고정시킨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대용 참고사진



【참고도 6】

사용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대용 참고사진

